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44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남인순 · 권향엽 · 김 윤
이수진 · 백혜련 · 김우영
진선미 · 김남근 · 한준호
박용갑 · 홍기원 · 김선민
김원이 · 이학영 · 임오경
박 정 · 서미화 · 허종식
민병덕 · 서영석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무제한토론 제도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

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회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

나.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6조).

다.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79조제4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 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일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 먼저 회부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2제9항 중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
2.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4.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과반수 의원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안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생략) <u><신 설></u>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79조 제4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u><후단 신설></u>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이 경우 당일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 작성하여야</u>

③ ~ ⑤ (생략)

<신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⑧ (생략)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신설>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을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 먼저 회부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

1.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

2.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

<u><신 설></u> <u><신 설></u> ⑩ (생 략)	<u>로 의결한 안건</u> 3. <u>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u> <u>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u> <u>로 의결한 안건</u> 4. <u>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과</u> <u>반수 의원이 발의하거나 찬성</u> <u>한 안건</u> ⑩ (현행과 같음)
--	--